

---

#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

---

2020. 9. 9


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
해외입국관리반

# 목 차

1. 격리면제서 발급 개요 .....	1
2. 격리면제서 발급 공통사항 .....	2
3.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.....	3
- 중요한 사업상 목적 .....	3
- 학술·공익적 목적 .....	5
- 인도적 목적 .....	6
- 국외출장 공무원 .....	7
4. 격리면제 관리강화 .....	8
-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.....	8
- 기업 및 단체 의무사항 .....	9
- 관계부처 협조사항 .....	9
5. 주요질의사항 .....	11
6. 관련 서식 .....	13

## 1. 격리면제서 발급 개요

### □ 개요

- 코로나-19의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 및 14일간 격리제도를 실시
  - 공공업무 공백 방지 및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등 긴급·불가피한 입국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격리면제 제도 운영(4.1~)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(8.24)를 통해 '격리면제서' 발급기준 및 절차,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'격리면제 제도 개선방안'을 논의·확정
  - ※ 근거법령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2항
- 격리면제서 발급 목적
  - 중요한 사업상 목적, 학술·공익적 목적, 인도적 목적, 국외출장 공무원

## 2. 격리면제서 발급 공통사항

### □ 격리면제서 신청

- 인도적 목적 및 단기출장 공무원의 격리면제 신청은 개인 단위, 중요한 사업, 학술·공익적 목적 등은 국내기업·단체 등이 신청 가능

### □ 격리면제서 발급 방식

- 격리면제서는 재외공관에서 대면 발급하되, 원거리·이동제한 등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(팩스) 신청 및 발급 가능
  - 격리면제서는 총 3부(원본 및 사본) 지참(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, ②검역대 제출, ③입국심사대 제출)

## □ 격리면제서 유효기간

-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(초일불산입)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, 발급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
  - 다만, 항공기 결항(지연) 등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에는(본인 입증책임), 재외공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재발급(면제기간 조정 가능)
- ※ 국내 코로나 상황(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)에 따라 유효 기간 제한 및 취소 가능

## □ 격리면제 기간

-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, 인도적 목적은 7일 이내 그 외 목적은 최대 14일까지(한국 날짜 기준)
  - 코로나-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 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
  -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·시설 격리\*
- \* 예시) 10.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10.10일까지인 경우, 10.11일 출국하거나, 10.11~15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필요

## □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

-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함(사후 발급 불가)
  -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

## □ 격리면제자 입국 절차

- 공항 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대기,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(일 1회 콜센터 전화) 실시
  - ※ 자가격리자 앱 및 자가진단 앱을 모두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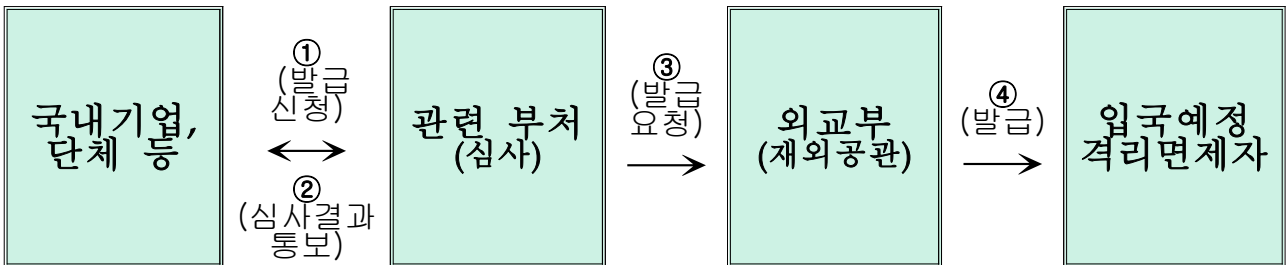
### 3.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

#### □ 중요한 사업상 목적(계약, 투자 등)

○ 발급 대상: 우리 국민 및 외국인\*

\*시증(8개): B-1(사증면제), B-2(무사증, 선원/긴급·상륙허가제외), C-1(일시취재), C-3(단기방문), C-4(단기취업), D-7(주재), D-8(기업투자), D-9(무역경영)

○ 발급 절차(중요한 사업상 목적, 학술·공익적 목적 공통)



※ 관련부처는 심사 후 신청인 정보(서식-5)를 재외공관에 문서로 요청, 재외공관은 부처에서 통보받은 명단을 참고하여 입국예정자에 발급(대면 또는 메일 등)

○ 관련 부처 및 분야

- 산업부(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), 문화부(문화, 체육), 농림부(농림, 축산, 식품), 국토부(건설, 교통), 해수부(수산, 해운), 금융위(금융), 중기부(중소기업), 교육부(산학협력), 과기부(IT·정보통신, 기초과학), 복지부(보건·의료), 식약처(식품안전, 의약품), 방사청(방위산업)
- 해당분야 등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부가 총괄하여 심사, 필요시 해당부처에 검토 의견 요청 가능

○ 심사기준

- 사업의 중요성, 긴급성,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\* 등
- \* 방역강화대상국가 출발의 경우 방역 위험요인에 대해 방대본(질병관리청) 의견 수렴 필요

○ 제출서류

신청기업·단체 등 → 관련부처 (격리면제 신청시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면제대상자 여권 사본 및 신청기업·단체 등의 관련 정보(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등)</li> <li>- 방문목적 증빙서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초청장, 계약서, 사업·행사 등 진행상황, 방문 외국기업·단체 현황 등</li> </ul> </li> <li>-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(활동계획 포함) (서식-1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활동계획서의 경우, 면제대상자 또는 초청기업·단체 작성 가능하며, 면제대상자와 보증인(초청기업·단체 대표) 모두 서명 필요</li> </ul> </li> <li>- 격리면제 동의서(서식-2),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(서식-3)</li> <li>- 방역대책 세부계획서(체류지 ~ 계약·행사장소)</li> <li>- 기타 중요·긴급 및 불가피성 증빙서류 및 관련 부처가 요청하는 서류 등</li> </ul>

면제대상자 → 재외공관 (격리면제서 발급시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면제대상자 여권 (유효한 비자 포함)</li> <li>-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(활동계획 포함) (서식-1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상기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(내용변경 불가, <u>원본과 동일한 사본 가능</u>)</li> </ul> </li> <li>- 격리면제 동의서(서식-2)</li> <li>- 면제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(호텔 예약확인증 등), 예약항공권</li> <li>-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</li> </ul>

※ 교류확대가능 국가 단기방문

○ 발급 대상: 교류확대가능 국가(지역)를 단기방문(14일\* 이내, 현지 격리 기간 제외) 후 귀국하는 국내 소속 기업 임직원(국민만 해당)

- 베트남(다낭·꽝남 지역 제외), 캄보디아, 중국(홍콩, 마카오, 신장위구르 자치구 제외), 태국, 대만 등(8.28일 기준)

\* 예시) 우리 기업인이 7.1 베트남 입국, 입국 직후 7.1~14간 격리, 7.15부터 현지 업무수행 후 7.28 베트남에서 출국하는 경우

\*\* 교류확대가능국가로 지정된 국가 현황 등은 대외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외 비공개임을 유의

- 발급 절차: 중요한 사업상 목적과 동일
- 관련 부처 및 분야: '중요한 사업상 목적'과 동일
- 심사기준: 출장 목적의 중요성
- 제출서류

신청 국내기업 → 관련부처 (격리면제 신청시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면제대상자 여권 사본 및 신청기업 관련 정보(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등)</li> <li>- 신청 공문(출장기간, 현지 격리 유무 및 기간, 출장목적 등 기재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출장목적 증빙서류 첨부: 초청장, 계약·투자 등 관련 서류 및 예약항공권 등</li> </ul> </li> <li>-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(활동계획 포함) (서식-1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활동계획서의 경우, 면제대상자와 보증인(소속기업·단체 대표) 모두 서명 필요</li> </ul> </li> <li>- 기타 관련 부처가 요청하는 서류 등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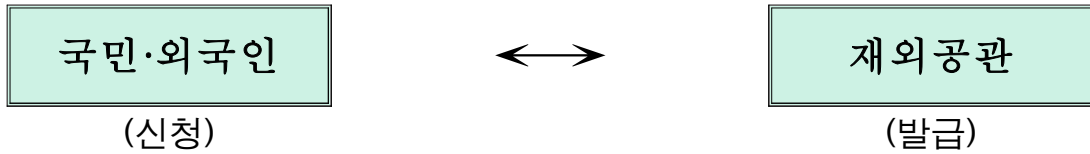
면제대상자 → 재외공관 (격리면제서 발급시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면제대상자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</li> <li>-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(활동계획 포함) (서식-1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상기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(내용변경 불가)</li> </ul> </li> <li>- 격리면제 동의서(서식-2)</li> <li>- (현지 격리시) 격리기간 입증자료</li> <li>-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</li> </ul>

□ 학술·공익적 목적

-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·행사, 학술 및 기술지원 등
- 국내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 마련 예정
  - 중요한 사업상 목적 발급 요건 및 절차에 준하여 관련 부처가 심사 및 관계부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재외공관 발급
- ※ 국제회의 등 규모가 큰 행사는 반드시 질병관리청과 사전협의 필요

□ 인도적 목적(장례식 참석 한정)

- 발급 대상: 우리 국민 및 외국인(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)
- 발급 절차



○ 발급 대상이 되는 장례식(발인·장지, 삼우제 등 포함)

- 본인의 배우자 장례
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
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(재혼 부모 포함) 및 직계비속(사위, 며느리 포함)의 장례
- ※ 격리면제 기간 도래 후 출국하지 않으면, 자가 또는 시설 격리

○ 심사기준

-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(당사자 입증 책임)
- 외국인의 경우,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(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) 제출 필요

○ 제출서류

신청인 → 재외공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</li> <li>-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(활동계획 포함) (서식-1)</li> <li>- 격리면제 동의서(서식-2)</li> <li>- 방문목적 증빙서류: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·결혼·혈족증빙 서류 등</li> <li>-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(체류지의 주소, 거주자 인적사항 등 작성 후 제출 가능)</li> <li>-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</li> </ul>



□ 국외출장 공무원(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)

○ 발급 대상: 공무원(국가·지방공무원)

○ 발급 절차: '인도적 목적'과 동일

- 출장지에 대사관 등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무출장명령서로 대체

○ 발급 대상

-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(14일 이내, 현지 격리기간 제외) 후 귀국하는 경우

- 재외공관(대사관, 영사관) 및 국제기구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 국내로 귀임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

○ 심사기준

- 공무출장명령서 및 출입국 항공권 등 확인

○ 제출서류

(신청인 → 재외공관)
- 신청인 신분증(여권, 공무원증 등)
-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(서식-1) * 활동계획서 작성 불요
- 격리면제 동의서(서식-2)
- 공무국외출장명령서 및 항공권
- 격리기간 입증자료(현지 격리시)
-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

## 4. 격리면제 관리 강화

### □ 격리면제자 의무사항

- 진단검사: 입국 시 코로나-19 진단검사 실시(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(최대 1박 2일))
- 능동감시: 입국 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매일 입력 및 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 확인
- 방역수칙 준수: 면제 기간 중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
  - 격리면제 목적 달성 외 개별관광 불가, 고위험시설(클럽, 유흥주점, 스탠딩 공연장, 노래연습장 등) 출입제한 등
- 활동계획 이행: 격리면제서 신청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 후 서명(날인)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
  - \* 활동계획서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(변경 불가)
- 격리조치: 격리면제자는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, 자가 또는 시설격리(자기부담 최대 15만원) 될 수 있으며,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
-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
-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
-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
- 항공기, 음식점,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(감염병의심자)로 분류되는 경우
-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

※ 격리조치 미이행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,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, 입국불허·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음

- 입국시 검역 단계에서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복지부 자가진단앱을 모두 설치

## □ 기업 및 단체 의무사항

- 방역대책 수립: 사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세부 방역대책(행사장, 숙소, 이동 교통수단 등)을 수립 및 이행
  - \* 격리면제 목적과 무관한 이동·방문 제한 및 전용 이동수단 마련, 내국인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
- 다수 인원 입국시 PCR검사 실시 후 대기 가능한 전용 숙소 마련 권장
  - 전체 호텔을 숙소로 지정하되, 불가피 할 경우 1~2개 층을 확보하고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하여 사용
  - 공항에서 임시검사시설 또는 전용숙소 이동 교통수단 마련
-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\* 마련
  - \* 격리공간, 체온계,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
- 활동계획서 이행관리 철저, 위반사항 발생시 관계부처에 보고\*
  - \* 격리면제자의 활동결과(위반사항 포함) 및 출국 여부 등 보고
-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 등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\*
  - \*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민·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

## □ 관계부처 협조사항

### <심사부처>

- 격리면제자의 활동 동향, 출국 여부 등을 총괄적 관리·감독

-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심사하고, 대규모 행사인 경우 반드시 질병관리청과 사전 협의 필요
- 격리면제 발급 신청 심사 시 신청서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및 신청서류 면밀히 확인
-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시 또는 발급 후 법 위반\*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국불허, 강제퇴거 될 수 있음을 안내
- \*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, 위·변조된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,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거나 격리조치를 거부하는 경우, 그 밖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등
- 심사 후 재외공관에 문서로 격리면제서 발급요청(서식-5 활용)

#### <외교부>

- 재외공관의 장은 격리면제서 발급 결과를 중수본(해외입국관리반), 방대본(검역지원과), 법무부(출입국심사과 및 인천공항출입국·외국인청), 외교부(영사서비스과), 인천공항검역소, 관계부처 등으로 공문 통보

#### <법무부>

- 격리면제자 정보\*를 출입국관리시스템에 입력·관리(출입국·외국인청)  
\* 성명, 면제사유, 국내주소, 방문기간, 격리면제기간, 국내연착처(본인 및 지인) 등
- 외국인 입국심사 시 격리면제 대상자에 대하여 「활동범위 등 제한 통지서」를 발급하여 방역당국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을 고지

#### <지자체>

- 격리면제 기간 도래 후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  
- 지자체 시설이 부족할 경우 정부운영 시설에 입소가능(사전 협의 필요)

## 5. 주요 질의사항

### 1.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이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? 관계부처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?

- 신청 기업 또는 단체가 관련 부처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→ 관련부처는 사업의 중요성·긴급성·역학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→ 재외공관은 관련부처의 심사결과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
- 산업통상자원부 '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'(☎1566-8110)에서 일괄적으로 관련 절차 안내

### 2. 위독한 가족의 임종을 보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?

-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,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

### 3.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하였으나, 자가격리 중 가족 사망 시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한지?

- 격리기간중 장례식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판단 가능
- 자가격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자가격리반(044-205-6512~6519), 방대본 격리자관리팀(043-719-9336~7) 으로 문의 바람

### 4.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? 또한 간병을 위해 같이 입국하는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?

- 긴급한 치료, 가족 간병 등의 사유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

- 다만, 응급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격리 중이라도 해당 보건소와 협의하여 병원진료 가능
- 아울러,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'외국인환자'는 사전에 의료기관과 협의 후 보건산업진흥원(☎043-713-8148)에 신청 가능

**5.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격리면제서를 출국 전 발급받지 못한 경우, 사후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?**

- 격리면제서 사후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

**6. 인도적 목적 입국자는 공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는지?**

- 인도적 목적(장례식 참석) 입국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 후 시설 대기가 원칙이나, 희망자에 한하여 공항 입국장 내에서 유증상자와 같이 검체채취(6시간 이상 대기)후 검사결과 음성 시 면제 가능(8.11~)

\* 공항 내 임시검사시설의 검사 대기 유증상자 수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

**7. 격리면제 기간을 결정하는 기관은?**

- 사업·학술·공익적 목적은 관계부처에서, 인도적 목적은 공관에서 결정